

건설교통부 김윤기 장관은 지난 3월 15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21세기 건설포럼 강연을 통해 「정부는 주기적인 조사와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등 잔존부조리를 척결하기로 했다」면서 「공공사업에 적용할 저가하도급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원도급금액 대비 82% 이하 하도급을 저가심사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내용은 강연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註]

#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향



## 건설

교통부 김윤기 장관은 지난 3월 15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21세기 건설포럼 강연을 통해 「연초 밀레니엄 은전조치를 계기로 과거의 처벌기록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가벼운 입장에서 비

리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불법하도급, 부정공동도급, 부실 등록 및 대여 등 잔존부조리를 주기적인 조사와 점검을 통해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윤기 장관은 「공공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저가하도급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저가하도급

급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라면서 「저가하도급심사대상을 원도급대비 82%로 하되 발주자가 공사특성, 난이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 탄력운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1] 우리 경제의 여건과 건설산업 정책방향

#### 1) 최근 경제동향 전망

IMF 이후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는 구조개혁의 성과와 국제 경제 여건의 호조로 경제성장률은 1998년 2/4분기 △7%에서 1999년 3/4분기 12.3%로 급반등하고, 금리와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실업율도 연초 8.6%에서 4.8%로 하락하는 등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1997년	1998년	1999년
성장율	5.5%	-7.2%(2/4분기)	12.3(3/4분기)
수출증가율	5.0	-10.8	15.3(3/4분기)
고정투자증가율	7.3	-23.7	6.9(2/4분기)
실업율	2.6	8.6(1999.2)	4.8(1999.12)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는 반면에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환율 급변동 등 국제경제여건이 급변하여 물가불안,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대내적으로는 건설업의 침체 등 업종별 경기 양극화 현상이 시정되고 있지 않는 등 아직도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 2]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안정된 성장궤도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침체를 보이고 있는 경기 양극화 현상을 조기에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경제가 지속적 성장과 양질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는 성장잠재력을 배양하여 어떠한 국내외 여건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 경제의 자유화, 급속한 기술변화와 정보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이 규제가 없고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역에

입지하는 「지구촌 산업입지 시대」가 전개되고, 소비패턴의 다양화 및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등 삶의 질에 대한 향상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업활동 및 국민복지 증진의 물적 Infra인 SOC와 주택 등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토를 기업하기 편하고 골고루 잘사는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적 인프라를 생산하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핵심요인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 3]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도로·댐 등 SOC시설과 주택 등 생활시설을 우리 국토에 구체화시키는 국가기반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들을 보다 싼값에 좋은 품질로 생산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건설산업의 목표이

며, 건설 및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기조절산업이므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토계획·주택·SOC·경기회복 등 여타 정책도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건설산업은 SOC 및 주택건설확충에 힘입어 건설투자가 GDP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는 등 전체 취업자의 9% 이상을 고용할 정도로 막대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건설업 진입장벽 해소에 따라 업체수도 증가했었다.

## 4] 건설산업의 특성

(1) 거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과는 달리 큰 자본이 없어도 사람의 능력과 Know-how를 최대한 이용하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적·기술자원을 결합하여 생산하는 과정에서 창조적 지식에 토대를 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지식기반산업이다.

(2) 시설물을 금융자산화 (ABS, MBS)하는 등 금융기능의 접목이 어느 산업보다 활발한 산업으로 복잡한 다단계 공

	1980년	1990년	1997년
건설투자/GDP	16.8%	22.1	21.1
건설취업자	83만명	133	200
일반건설업체	517개	918	3,900
전문건설업체	2,494개	5,842	23,925

사수행과정에서 위험분산을 위한 보증장치가 수반되고 투자비용 조달을 위한 자금동원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금융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3) 생산과정에서 발주자, 도급·하도급업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참여하게 되어 관행·관습 등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불합리한 관행·관습을 탈피하기 위해 정보와 회계가 보다 투명하게 처리되어져야만 산업합리화가

가능하다.

(4) 수주산업의 속성상 전년 수주물량의 이월효과로 경기변동의 타격을 비교적 늦게 받는 반면 회복도 가장 늦은 산업이다. 멕시코를 사례로 들면, 1994년 12월 외환위기 후 여타 산업들은 1996년에 평상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건설업만은 1999년까지도 회복하지 못하여 실업 등 IMF 충격을 극복하지 못한 유일한 산업이다.

(4) 현재 건설산업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느냐」의 두 가지 과제이다.

6] 최근 건설산업의 상황인식  
외환위기 이후 금융업·제조업 등 여타산업은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은 미진하다. 이는 경기후행적인 건설산업의 속성상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은 여타 산업에 비해 늦게 진행되는 성향인데다 현재 100대 건설업체 중 25개사가 법정관리·화의·Workout 중이나 얼마나 많은 업체가 도산될지는 미지수이며 구조조정 방향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은 더욱 지리해지고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999년 4월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과행적 입찰제도의 원인이 되었던 담합관행도 붕괴되고, 올 1월 15일에 시행된 밀레니엄 은전조치에 따라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실별점 등 각종 행정불이익조치도 해소되는 등 그동안 건설산업의 구조조종을 막아왔던 애로 요인 또한 해소되고, 특히 금융산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금융기능에 의한 건설시장의 자정(自淨)장치가 정착에 있으므로 향

## 5] 건설산업의 어제와 오늘

건설산업은 그간 정부보호위주로 성장하여 왔으나 1997년부터 건설업면허가 개방되면서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1) 1960~1980년대 : 폐쇄 적인 건설업 면허제도로 시장진입 장벽을 통해 특권적 혜택 수혜

구 분	1965년	1989년	증감율
건설공사수주액	271억원	16조원	+575배
일반건설업체수	561개사	930개사	+1.6배

(2) 1990년대 : 면허개방으로 업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200만호 주택OC 확대 등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 구가

구 分	1991년	1997년	증감율
건설공사수주액	33조원	80조원	+2.4배
일반건설업체수	912개사	3,930개사	+4.2배

(3) IMF 이후 : 공사물량이 절반 이상 격감하는 가운데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업체수가 급증하여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조조정 국면에 진입

구 分	1997년	1999년	2000년(추정)
건설공사수주액	80조원	46조원	50조원
일반건설업체수	3,896개사	5,126개사	6,000개
업체당 평균수주액	200억원	89억원	83억원

후 1~2년이 건설산업 구조조정의 적기이다.

작년까지 건설산업정책의 무게가 「경기활성화」에 있었다면 올해에는 「산업의 구조조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7] 향후 여건전망 및 정책방향

건설산업의 구조를 형성하는 근간이 정부규제에서 시장기능으로 완연히 이동될 전망이다. 업역을 구분하여 정부가 물량을 배분하는 식의 보호정책은 더 이상 그 정당성과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규제보다 입찰·신용평가·보증 등 시장기능에 따라 진입·퇴출을 조절하는 장치가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향후 정부정책도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금융·입찰제도·정보) 구축과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장치(저가하도급·부실공사방지)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조립 위주의 기술력보다는 Network에 바탕을 둔 지식의 구비가 경쟁력의 관건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CALS, 건설산업 D/B 등 정보분야가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설계·시공·감리 등 3영역간 정보의 집적·분석·유통능력여부가 부가 가치 창출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건설산업의 성격도 종래 업역별로 구분되었던 건설분야



가 각 기능별로 상호연계되거나 종합화가 이루어져 시공위주의 단순서비스산업에서 복합산업 구조로 변화되고 새로운 건설산업분야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IMF 이전을 회복하는 2002년경부터 외국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국제규범의 적용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EC능력을 갖춘 해외 대형건설업체들의 국내 진입시 국내업체들은 외국건설업체의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자연 생산과정·회계·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이의 체질화가 주요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 8] 건설산업 정책방향

IMF 이후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여 신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추세에도 불구하고 침체

가 계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담합관행 하에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입찰·계약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저비용·고효율 생산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CM방식을 도입하는 등 건설산업의 지식·정보화를 추진하고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회계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2] 주요 추진정책

#### 1] 건설경기 활성화

##### (1) 최근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외환위기 이후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던 건설 및 주택경기가 작년 2/4분기부터民間건축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수주와 건

축하가 등 선행지표들의 상승폭이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1997년	1998년	1999년
건설투자	2.3%	-10.2	-10.5(1.4-3/4)
건설수주	8.3%	-40.1	6.8
건축하가	0.4%	-55.0	42.3
주택건설	0.7%	-48.7	32.2

올해 건설투자는 5% 이상, 건설수주도 12% 이상 증가하고 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IMF 이전에 비해 건설투자는 83%, 건설수주는 71%에 불과하여 이전수준을 회복하는데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기조에도 부합한다. 만약 건설투자가 부진한 현재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경기회복 및 성장잠재력 배양에 장애요인

## (2)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SOC예산을 증액하고, 이를 조기집행하는 등 공공건설투자를 확대하여 SOC사업에 지난해보다 6,680억원(5%) 증액된 14조 768억원을 투입하고 9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며 건설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11건(700억원)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도 5건(305억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제조업	1.984	26천명/1조원	0.304
건설업	2.010	32천명/1조원	0.169

② 건설투자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공공적 성격도 아울러 보유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국제 경

② 작년에 25,7평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1999년 6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소득공제금액도 연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또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T 셉지원을 강화한데 이어 올해도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자금지원도 확충하여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을 세대주당 1주택에서 20세 이상 성인 1인당 1세대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작년 11조 7,200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주택구매력을 확충하기 위해 11조 8,604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국민주택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전망
건설투자액	90조원	80	72	75
건설수주액	80조원	48	51	57
주택건설호수	59.2만호	30.6	40.5	50

## 건설경기 활성화의 필요성

① 건설투자는 산업연관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반면 수입유발효과는 작아 성장의 구심점 역할이 가능하다. 10조원 건설투자시 총 생산유발액은 20조 100억원에 달하고 실업율은 1.5%p 하락하고 수입유발효과 또한 극히 낮아 경상수지 혹

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SOC투자 확충이 필요하며, 주택공급 확대시 주택가격 오름세를 차단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주가안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 1997년 국가 물류비 : GDP의 16.5%(미국 10.7%, 일본 9.5%)

기금을 당초 14조원에서 17조원으로 확대) 18평 이하 주택은 집값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중도금 대출금리도 인하(분양 중도급 대출: 금리 연 8.5% → 8%)하여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모든 근로자와 서민」으로 확대하는 등 총 1조 2천억 원을 지난 3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호당대출	4천만원 → 집값의 1/3까지로 확대
총지원규모	당초 2,500억원 → 1조 2천억원
금리	7.75% ~ 9%(4천만원까지는 7.75%, 초과시 9%)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구입자금을 지원(1만호, 호당 3천만원)하고, 올해안에 전세계약갱신시 전세금 증가액의 50%까지 지원(1만 세대, 호당 2천만원)하는 등 IMF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기간 갱신에 따라 상승이 예상되는 전세값 안정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있다.

### (3) 건설업체 경영안정 지원대책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각적 방안을 시행중에 있다. 건교부 산하기관이 공공공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비율의 인상을 요구하여 1999년부터 인상하였으며, 중소건설업체가 공공공사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난 1998년 9월부터 2000년 8월

까지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 등을 보아가며 특례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다.

또한 하도급에 주로 의존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일반건설업체는 기획·타당성분석·시공관리 등을 맡고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업무에 특화하여 공사 수행)하고, 중소건설업체의 KOSDAQ

과 최근 공공공사의 입찰경쟁이 심화되어 PQ공사의 낙찰율이 하한선인 73%에서의 저가낙찰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품질저하 및 도급·하도급업체의 수익성 약화로 인한 동반부실 등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 PQ공사낙찰율 : 84.7%(1996년)  
→ 85.6%(1997년) → 79.3%(1998년)  
→ 73%(1999년)

시장 진출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자금조달경로를 다양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금년 상반기중 증권업협회 세부규정 개정 예정)하는 등 유망한 중소건설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자금조달의 애로사항을 완화할 계획이다.

### 2)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1) 최근 실태와 구조조정의 당위성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물량은 급감하고 있으나, 규제완화에 따른 업체수 증가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결

시장 개방 이후 칸막이식 업역분할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시장기능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화(1999.4) 등 정부규제는 대폭 완화되었으나 업체선정별 장치 등 경쟁률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고, 특히 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시장의 자정(自淨)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건설한 업체와 부실한 업체의 혼재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공분야에 국한되어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아(시장규모는 세계 9위이나, 엔지니어링 능력은 선진국의 63% 수준으로 25위

구 분	1997년	1999년	2000년(추정)
건설공사수주액	79조원	51조원	56조원
일반건설업체수	3,896개사	5,126개사	6,000개사
업체당 평균수주액	202억원	99억원	93억원

권에 불과)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 시공 등 Hard분야는 그 런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기획·사업관리 등 Soft 한 분야가 취약하다. 시공분야도 단순도급방식에 치중되고 지식·정보화의 기반이 미흡하여 수익 창출이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

건설산업이 21세기에도 싼값에 고품질의 시설물을 생산하여 국가경제의 핵심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조속히 구조조정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 구조조정 방향 : 낙후된 국내 관행을 Global Standard로 이행하고, 정부의 보호대신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률 확립

① 입찰제도 개선 : 과연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선별장치 마련  
② 금융의 지배·감독 : 경영투명성·재무건전성·수익성 확보

③ 건설산업의 지식기반화 : 단순시공에서 건설사업관리(CM)등 지식·정보기능의 복합 수행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④ 잔존관행 척결 : 감리기능을 강화하고 저가하도급을 방지, 부정공동도급·면허대여·불법 하도급 등 관행 타파

## (2) 입찰제도의 개선

그간의 「담합·덤핑·부실시공」 이란 오명을 벗칠 수 있도록 변화된 입찰환경에 부응하는 새로

운 파라다임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의 저가낙찰 구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2~3년내 산업 전체가 연쇄부실되고 부실시공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담합을 근절해 나감과 아울러 낙찰가격을 현실화하여 기술과 경영에 바탕을 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격심사제」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제도의 틀은 잘 짜여 있으나 요소별로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저낙찰율(73%)이 지나치게 낮아 모든 업체가 최저가에 입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덤픽 아니면 담합이 불가피하다. PQ점수(기술 및 경영평가)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만점을 받고 있음에 따라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 \* 현행제도 개요

△ PQ : 시공경험(30점)·기술(35점)·경영(35점)·신인도( $\pm 10$ 점), 평가후 60점 이상 입찰참가(대부분 업체가 100점 이상)

△ 적격심사 : PQ점수(70점)+기격점수(30점)가 85점 이상 업체중 최저입찰자를 선정(73% 입찰이 불가피)

부실공사 요인 및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정낙찰율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사가격이 현장공사비에도 못 미치면 부실공사가 불가피하고,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조건 악화가 연쇄적으로 초

래되어 산업기반 악화가 우려된다. 현행 최저낙찰율이 직접공사비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PQ 및 적격심사제의 평가 변별력을 높여 우수한 업체가 보다 많이 수주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업체가 만점받는 항목을 조정하여 새로운 평가 항목을 도입함으로써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입찰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동일공종에 특화된 업체가 우대반도록 개선하여 시공경험 및 기술심사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경영성과 지표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신인도 점수를 대폭 감축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비율을 완화하고 공동도급 지분비율을 확대하는 등 중

소건설업체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지난 1999년 12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데로 시행할 예정이다).

## (3) 건설금융 기능의 제고

건설보증 및 업체평가제도 등

을 개선하여 금융기능에 따른 건설시장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가시화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의 연대보증제를 신용보증제로 전환(1999. 7)한데 이어 부실한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체별 신용평가를 더욱 차별화(부도업체 등 신용도와 기술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보증서 발급시에 배제되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공사이행 보증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업체 도산과 부실방지에 제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중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주) 및 기타 금융기관의 이행보증상품 개발과 이행보증 취급 능력을 배양하고 손해보험사와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속한 상품개발을 통해 건설보증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보증기관간 경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은행차입보다는 중시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여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체의 중시 및 KOSDAQ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타 산업과의 차별적 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 (4) 건설산업의 지식기반화

세계적 추세인 「EC化」에 부응하여 「기능」 중심의 유연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을 구축한다. 건설업체들이 시공분야에서 탈피하여 엔지니어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CM)제도를 활성화한다. CM이 공사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기획·관리·조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가 설계·감리·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 등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의해처리하여 CM사업자로 등록하고, CM이 활성화되도록 서비스분류기준·표준계약서·대가기준·메뉴얼 등 하위기준을 정비한다.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CLAS체계와 건설산업 D/B를 조기에 구축한다. CLAS의 3대 축인 「건설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체계」, 「입찰·계약업무 전자처리체계」 및 「건설사업정보 전자교환시스템」을 2002년 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건설업체 및 생산요소 관련 주요 정보를 D/B화하여 유통시키는 「건설산업 지식정보 유통체계(KISCON.NET)」를 금년중 구축(15%의 공기단축과 10%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하여 지식·정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5) 잔존관행의 척결

1) 감리기능 강화 : 감시기능 강화 및 기능 효율화

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

감리검수단」을 구성하여 주요 현장의 감리실태를 불시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처벌한다. (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작성, 3월 1부터 시행하며 점검대상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책임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500억원 미만 공사도 점검)

② 감리관련법령 다기화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 : 현행 감리제도는 발주주체 및 기술분야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으로 다기화하여 동일공사에 있어서는 모든 분야를 통합감리하는 감리업체(콘소시움 포함)를 감리자 선정평가시 우대하여 다기화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한다.

③ 감리종류, 업무범위 등 감리기본규정을 모든 감리제도가 포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감리제도 일원화의 틀을 마련한다.

④ 책임감리 외에 시공감리, 검측감리 및 건설사업관리(CM)를 도입하여 관리방식을 다양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한다.

### 2)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 : 저가하도급 방지

① 외환위기 이후 저가낙찰로 인한 저가하도급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적정공사비가 투입되지 못해 공사품질의 저하가 우려됨으로 공공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저가하도급심사지침(하도급대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지침 제정/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을 제정하여 저가하도급 요인을 해소 한다.

② 저가하도급 심사대상은 원도급액 대비 82%로 하되 발주자가 공사특성, 난이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 운용한다.

③ 심사절차는, 발주자는 감리자 의견 등을 토대로 저가심사하고 저가로 판단될 시 하도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업체가 미이행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 3) 기타 부조리 척결

① 밀레니엄 은전조치(2000. 1. 5.)를 계기로 과거의 처벌기록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정부도

가벼운 입장에서 비리는 강력 대응한다.

② 부정공동도급, 불법하도급, 부실등록 및 대여 등 잔존부조리에 대해 주기적인 조사와 점검을 통해 척결한다.

### [3] 맷음말

IMF 이후 건설업은 시장환경 자체가 급변함에 따라 지금 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구조조정을 경험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도 건설업이 SOC와 주택 등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창조적 신지식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감내해야 할 고통이라도 생각된다. 정부

에서도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업계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저가낙찰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체의 중시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우리 건설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한차원 높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도 건설환경 변화를 인식하여 물량보다는 내실있는 경영을 추구하고 기술개발에 전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자기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업계와 정부의 합심된 노력을 바탕으로 건설산업이 제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 12m 도로를 사이에 둔 2개의 공사현장에

###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여부

**Q** 각각 별개의 사업계획으로 추진중인 공사로서 12m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사금액이 250억원인 공동주택(190세대, 20층)과 350억원인 공동주택(350세대, 20층)을 시공하는 경우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 는지

**A**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

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각각 별개의 사업계획으로 추진중인 공사로서 12m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사금액이 250억원인 공동주택(190세대, 20층)과 350억원(350세대, 20층)을 시공하는 경우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걸쳐 배치하여도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을 것인지의 여부 등을 사업계획승인기관이 검토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